

하며, 정부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인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방향에도 적합하므로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대한 교통세등 세부담이 인상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조금액을 주행세율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이 보조금액 만큼을 주행세율을 인상 반영하게 되었다.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은 당초에는 2001.1.1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연간)에 대하여는 국가의 에너지세제 개편(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증수되는 국세채원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세가 3년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게되므로 이의 완화를 위하여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1.4.1에서 2001.7.1로 연기하고, 인상기간도 2001년~2003년까지 3년간에서 2001년~2006년까지 6년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국세 징수예상의 차질이 발생하여 지방세수 감소액 전액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차등과세 시기와 주행세율 인상시기를 2001.1.1에서 2001.7.1로 연기하였으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도 2002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에 대하여는 2001년중에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하게 된다

## 2) 개정개요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하였으며, 제2항에서 30%의 탄력세율을 규정하여 교통세율의 변동 및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